

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41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2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의 밀집 요건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 ‘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(안) ‘에 맞춰 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의 밀집기준 완화 (안 제4조)
- 나.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시 구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단서 조항 신설 (안 제4조)
- 다.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해당구역 상인 동의 요건 완화 및 토지·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 삭제(안 제5조)
- 라. 그 밖에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4. 1. 26. ~ 2024. 2. 5. (10일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부서협의결과

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
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
가) 중앙부처 :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

나) 경 기 도 : 소상공인과

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” 를 “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” 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를” 을 “각 호의 요건을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, 주차장, 광장, 공원 등의 면적은 제8조에 따른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” 를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” 로, “30개” 를 “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개수” 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2호 중 “한다)제2조제3호” 를 “한다) 제2조제3호” 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상업지역: 25개 이상

나. 상업지역 외 지역: 20개 이상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을 구분하고 그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하여 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 를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 로, “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” 를 “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” 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3분의 2” 를 “2분의 1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“제1항” 을 각각 “제2항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중 “경우” 를 “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1항” 을 “제2항” 으로 한다.

5.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

제7조 중 “예산 범위” 를 “예산의 범위” 로 한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업무” 를 “골목형상점가 업무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” 를 “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업무” 를 “골목형상점가 업무” 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·과·소		일자리경제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 명	일자리경제과 이 회 숙
	팀 장 성 명	소상공인지원팀장 송 지 연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류승선(☎2563)

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

※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성명	전화번호
	주소	팩스번호

상점가 구역 개요	상점가명				
	면적 및 점포수	총 면적	총 점포 수(개)		
	구역 상세	주소	대지면적(㎡)	점포 수(개)	
신청사유 및 목적					

「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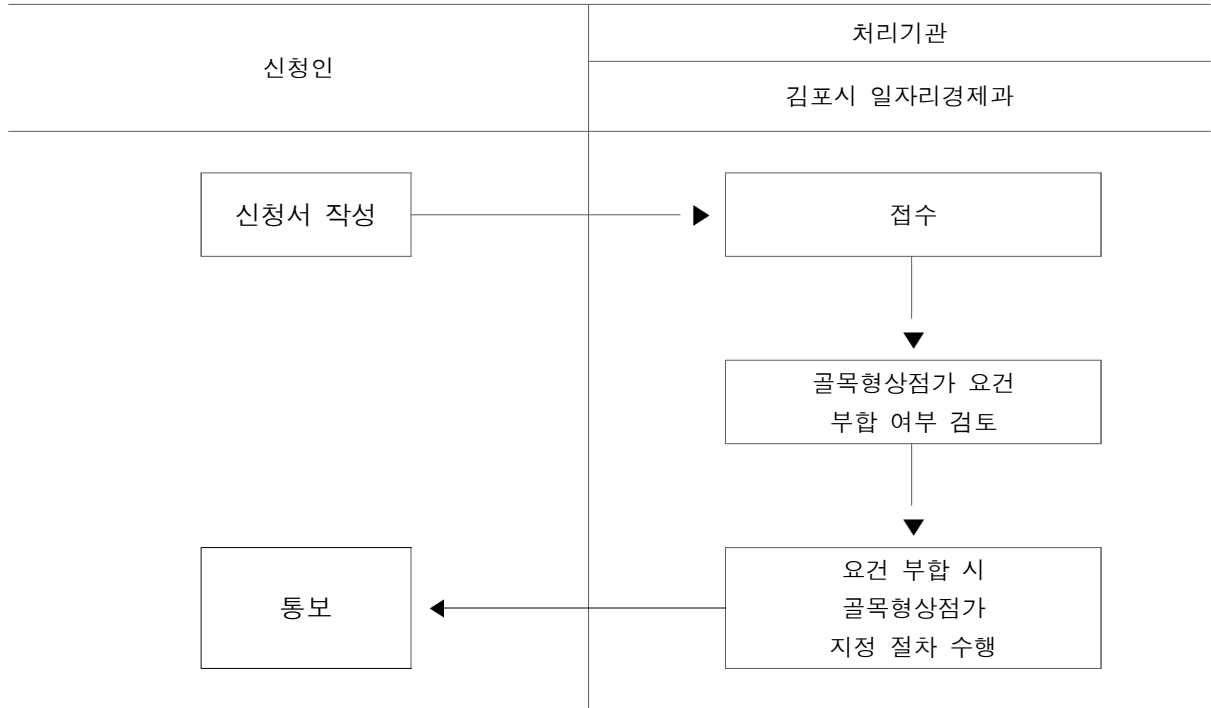
김 포 시 장 귀하

첨부서류	1.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.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.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(정관) 및 명부 4.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제 호

골목형상점가 지정서

1. 상점가명:
2. 소재지:
3. 구역면적: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
및 「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
가로 지정 합니다.

년 월 일

김 포 시 장

직인

역

<신 설>

제5조(골목형상점가 신청 등) ①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. 다만,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
2.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(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)의 동의
3.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
4. (생략)
5.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
6. · 7.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을 구분하고 그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하여 정한다.

제5조(골목형상점가 신청 등) ①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-----

----- 별지 제1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---. <단서 삭제>

1. -----
----- 2분의 1 -----

<삭 제>

<삭 제>

4. (현행과 같음)
5.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
6. · 7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생략)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.

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기업부장관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업비 지원)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,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 ①·

② (생략)

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 제2항-----

-----.

⑤ ---- 제2항-----
-----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-----
-----.

⑥ ---- 제2항-----

-----.

제7조(사업비 지원) -----

예산의 범위-----
-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 ①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골목형상점가 업무 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⑥ (생략)

<신설>

④ -----
----- . ----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-----
----- .

⑤ -----
----- 골목형상점가 업무 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[별지 제1호서식]

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

※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성명	전화번호
	주소	팩스번호

상점가구역개요	상점가명		
	면적 및 점포수	총 면적	총 점포 수(개)
		주소	대지면적(㎡)
	구역상세		
신청사유 및 목적			

「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김 포 시 장 귀하

첨부서류	1.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.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.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(정관) 및 명부 4.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210mm×297mm [백상지 80g/㎡]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”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 등) 이 조례는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적용의 예외)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, 지원되는 대규모점포·준대규모점포·전통시장·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.

제4조(골목형상점가의 기준)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
2.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

제5조(골목형상점가 신청 등) ①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. 다만,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
2.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(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)의 동의
3.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
4.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
5.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
6. 상인조직의 회칙(정관) 및 명부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

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, 상권의 규모,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.

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경기도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
2. 제5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3. 골목형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상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7조(사업비 지원)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,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)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1.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
2.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·사회단체 대표
3. 유통산업·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
4. 도시계획, 도시개발, 건축,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, 운영 및 수당·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를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중소벤처기업부 “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” 조례 협의(안)

□ 배경

- “골목형상점가”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부와 협의시 요건(2천㎡, 30개점포이상)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,
 - 그동안 우리부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“2천㎡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”을 일관되게 적용
- 지자체에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협의(안)을 마련 (“23. 8. 1.부터 적용)

□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(안)

- 골목형상점가는 지자체의 지역 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제도임
-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밀집기준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임

① 도시규모와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적용

- 도시규모는 행정구역, 인구규모, 도시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고,
- 용도지역은 골목형상점가 대부분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로 분류

<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변경(안) >

구 분		밀집기준 변경(안)
대도시 (특별시·광역시 內 읍면동)	상업지역	2,000㎡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으로 밀집
	상업지역 외	2,000㎡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밀집
중소도시 (특별도·시, 도 內 읍면동)	상업지역	2,000㎡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밀집
	상업지역 외	2,000㎡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밀집
농어촌(군 內 읍면동)		2,000㎡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밀집

② 도시지역 중 광역시의 郡지역*은 농어촌지역으로 예외 적용

- 행정구역 상 지리적, 입지적,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 적용 필요
- * 부산광역시(기장군), 대구광역시(달성군, 군위군), 인천광역시(강화군, 옹진군), 울산광역시(울주군) 등 6개
- ** 도시지역중 지리적, 입지적,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 적용이 필요한 경우 협의 가능함

③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①주용도 지역이 50%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하거나 ②상업지역과 상업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

- 일부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밀집도가 낮은 점을 고려함
- * 예시1) (대도시) 상업지역 60%, 상업 외 지역 40% → 상업지역 적용하여 30개
- * 예시2) 위 조건과 같음 → (상업) 30개×60%=18, (상업 외) 25개×40%=10, 28개 적용

※ [참고사항]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

- 골목형상점가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,000㎡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임
-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상 상점가의 범위에 준하여 정하였음

-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-



김 포 시



수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(전통시장과)
(경유)

제목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관련 협의 요청

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-1617(2023. 7. 31.)호와 관련하여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추진 관련 협의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 후 2023. 12. 14(목)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협의(안) 1부. 끝.

김 포 시 장

주무관	류승선	소장공인지원	담당	이광은	일자리경제과	전결	2023. 12. 7.
협조자					장		류승선
시행	일자리경제과-41649					접수	
우	10108	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, 4층, 일자리경제과 (사우동)					/ http://www.gimpo.go.kr
전화번호	031-980-2563	팩스번호	031-980-2269		/ ad2501@korea.kr		/ 비공계(5)

* 소중한 개인정보, 지키면 즐거워요! *

“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”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협의(안)

김포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를 위하여 “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”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협의를 요청함.

□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내용

○ 현행 밀집기준
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

○ 개정 밀집기준 (검토중)
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밀집,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
-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고 그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하여 정함.
- 구역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 심의로 도로, 주차장, 광장,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음.



중소벤처기업부

수신 김포시장(일자리경제과장)
(경유)

제목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(안) 협의 결과 알림

1. 관련근거

가. 김포시 일자리경제과-41649호(2023. 12. 7.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관련 협의 요청)

나. 전통시장과-1617호(2023. 7. 31.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(안) 알림)

2. 귀 시에서 요청한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(안)은 전통시장법 제2조(정의)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에 의거하여 검토한 결과, 지정기준에 충족하는 등 이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중소벤처기업부장관부



주무관	신대순	서기관	정상만	전통시장과장	전경 2023. 12. 8. 인원호
협조자					
시행	전통시장과-2537	(2023. 12. 8.)	접수	일자리경제과-41791	(2023. 12. 8.)
우	30121	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, 세종파이낸스3차 (어진동)		중소벤처기업부 5층	/ www.mss.go.kr
전화번호	044-204-7900	팩스번호	044-204-7909	/ sds8808@korea.kr	/ 비공개

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는 "왔다 열"